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정의로운 전환 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홍식

충청북도 정의로운 전환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박 지 현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3년 3월 3일

나. 회부일자 : 2023년 3월 6일

3. 제안이유

충청북도가 기후체계 보호와 탄소중립 이행을 도모하고자 정의로운 전환으로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정의로운 전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바. 노동전환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사. 정의로운 전환 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5. 검토내용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전면적으로 대두되고, 기

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 해소가 필요함에 따라, 충청북도가 정의로운 전환으로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련의 사항 등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생략)

13.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14. ~ 17.(생략)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조례 제정의 정당성 및 적합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는 기후 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⑤ (생략)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⑦ ~ ⑨ (생략)

○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충청북도의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 필요한 사항 등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
 - 안 제2조는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
 - 안 제3조는 도정 등 모든 부문에서 정의로운 전환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충청북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5조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5년 단위의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6조는 정의로운 전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0조는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안 제11조는 주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안 제12조는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의 추진, 안 제13조는 노동전환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함.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조례안 예고(‘23. 3. 8.~‘23. 3. 14.)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2년 12월 충남에서 관련 조례를 최초 제정하였고, 현재 다수의 광역단체 및 지자체에서도 검토 중에 있음.
 - 관련부서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타 “**특이한 사항**” 은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례안은 정의로운 전환 시행계획의 수립, 위원회의 설치,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추진 및 노동전환 지원, 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조문 내용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 「충청북도 정의로운 전환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사업의 육성·촉진·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충청북도의 현재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는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바,
- 충청북도가 선제적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 제5조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조례 제정·시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부에서 부처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개별 법령의 제정·개정, 지침과 추진전략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정부의 계획과 연계 관련업무가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함.